

의안번호	2211596
의 퇴 인	조지연의원
회 답 일	2025.9.15.
추계번호	25B3889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5조 (중소기업에 대한 지원)	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음 <u>5.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생산 및 확산을 위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</u>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45조 (중소기업에 대한 지원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¹⁾ 생산 및 확산을 위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, 기존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환경부는 기업, 시민사회, 정부와 함께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 협의체를 구성하여, 기업이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고위험 물질을 줄이고 안전한 원료로 대체·저감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

1) 안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4. “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”이란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중 화학물질 사용량을 현저히 줄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한 대체물질로 교체한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을 말한다.

[표 1] 화학제품 안전관리 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 (코드명)	내역사업 (내내역사업)	사업개요	2025 예산
화학제품 안전관리 (2310-304)	화학제품안전법 제도이행지원 (화학제품 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)	-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민·관 협의체 운영 - 제품 내 유해원료 저감·대체 프로그램 운영 -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심사제 운영 -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운영	783

자료: 환경부

- 다만, 환경부에 따르면 현행 사업은 민·관 협의체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개발·생산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,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, 기존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규모, 지원 범위 및 수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, 현시점에서는 해당 중소기업의 규모를 특정할 수 없고,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생산·확산을 위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움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